

#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변경 및 예비비 사용 관련 보고

---

① **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**

---

② **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**

---

# 1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

## 1.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(조례 제7667호, 2020.07.16. 공포·시행) 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948, '20.07.22.)의 개정조치 요청사항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용어(직) 일괄 정비 (안 제8조, 제9조3항, 제10조1항)
  - ‘노동자이사’ → ‘노동이사’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노동이사의 ‘이사회 안건 제출권’, ‘정보열람권’ 정관에 반영 (안 제13조3항)

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→

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또한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(후단 신설)

-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(안 제14조1항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
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→

1. 미성년자  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
- 결산서 제출시기 변경(안 제37조2항) : 3개월 이내 → 2개월 이내

### 3. 참고사항

#### ○ 제안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, 제9조(권한)
-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 알림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948, '20.07.22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, 제19조(결산)

#### ○ 추진절차 및 일정

|    |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|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-------|
| 구분 | 시의회<br>상임위 보고 | → | 이사회<br>의결  | → | 서울특별시<br>시장<br>승인 | → | 보건복지부<br>허가 | → | 시행    |
| 일정 | '20.12.17.    |   | '20.12.23. |   | 12월 중             |   | 12월 중       |   | 12월 중 |

#### 【추진절차 관련 근거】

##### 1. 시의회 상임위 보고

：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(정관)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,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# 2. 시의회 상임위 보고 → 이사회 의결 → 시장 승인 → 보건복지부 허가

：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39조(정관의 변경)

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# 4. 첨부

- 붙임1.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 알림 공문
- 붙임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9조 전문
- 붙임3. 신·구조문 대비표
- 붙임4. 현행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1부.
- 붙임5.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1부.

# 【붙임1】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 알림 공문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
I·SEOUL·U  
내외국세

## 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 
seoul.go.kr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

1. 공기업담당관-827(2020.1.16.)호와 관련입니다.
  2.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'20. 7. 16.자로 공포·시행되어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드립니다.
  3. 투자·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셔서 임직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직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\*법적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,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)
- ※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시행일자 : 2020. 7. 16.자
- 붙임 : 1.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1부,  
2.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,  
3. 조례 개정 공포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투자기관 시 주관부서,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출연기관

07/22

주무관 이원봉

공기업담당관 유계우

공기업담당관 김미경

협조자

시행 공기업담당관-8948 (2020-07-22)

접수 인사총무팀-3149( 2020.07.27. 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) 서울시장 신청사 8층 / <http://finance.seoul.go.kr/publicenterprises>

전화 (02)2133-6773 전송 (02)2133-0664 / [jusarang1@seoul.go.kr](mailto:jusarang1@seoul.go.kr) / 공개()

## 【붙임2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9조 전문

###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 약칭: 지방출자출연법 )

[시행 2020. 6. 4] [법률 제16665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



행정안전부(공기업정책과) 044-205-3970

####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

**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미성년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#### 제3절 예산과 회계

**제19조(결산)**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#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(안) 신구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  |
|--|---|
| 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 이사, <b>노동자 이사</b> 1명을 포함한다.)<br/>                     &lt;개정 2019.02.28.&gt;&lt;개정 2019.07.31.&gt;</p> <p>4. 감사 2인</p>   | 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 이사, <b>노동 이사</b> 1명을 포함한다.)<br/>                     &lt;개정 2019.02.28.&gt;&lt;개정 2019.07.31.&gt;</p> <p>4. (생략)</p>  |
| 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b>노동자 이사</b>는 입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&lt;신설 2019.07.31.&gt;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 | 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b>노동 이사</b>는 입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&lt;신설 2019.07.31.&gt;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b>노동자 이사</b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직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8.08.21.&gt;&lt;개정 2019.02.28.&gt;&lt;개정 2019.07.31.&gt;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, <b>노동 이사</b>는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b>제13조(임원의 직무)</b>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&lt;개정 2018.08.21.&gt;</p> <p>④ (생략)</p>   | <p><b>제13조(임원의 직무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<b>또한 이사회 안전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</b>&lt;개정 2018.08.21.&gt;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 |

| 현 행  | 개 정  |
|--|--|
| 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li> <li>2. <u>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u></li> <li>3. <u>급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</li> <li>4. <u>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u></li> <li>5. <u>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</u></li> <li>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 <p>② ~ ③ (생략)</p> | 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미성년자</u></li> <li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<u>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</u></li> </ol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b>제37조(결산)</b>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<u>3개월</u>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8.08.21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삭제 2018.08.21&gt;</li> <li>2. &lt;삭제 2018.08.21&gt;</li> <li>3. &lt;삭제 2018.08.21&gt;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  | <p><b>제37조(결산)</b> ① -----</p> <p>----- <u>2개월</u></p> <p>-----</p> <p>---&lt;개정 2018.08.21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|

**【붙임4】 현행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**

**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**

제정 2015.11.06.  
개정 2016.07.11.  
개정 2016.12.29.  
개정 2018.08.21.  
개정 2019.02.28.  
개정 2019.07.31.  
개정 2020.06.01.  
개정 2020.06.01.

**제1장 총 칙**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  
(개정 2018.08.21)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2.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(개정 2020.06.01.)
3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실태조사
4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,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, 문화·여가생활 지원, 상담
5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6.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
7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8.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, 출판 및 캠페인

9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10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〔본조 신설 2018.08.21〕

**제7조(광고방법)**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광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노동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.)  
〈개정 2019.02.28.〉〈개정 2019.07.31.〉
4. 감사 2인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〈개정 2019.07.31.〉

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③ 노동자 이사는 입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〈신설 2019.07.31.〉

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〈개정 2019.07.31.〉

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〈개정 2019.07.31.〉
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<신설 2016.12.29.><개정 2019.07.31.>

⑤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07.31.>

⑥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<신설 2018.08.21.><개정 2019.07.31.>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자 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직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.><개정 2019.02.28.><개정 2019.07.31.>

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개정 2018.08.21>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경영전문가
2. 사회복지,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<개정 2018.08.21>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개정 2018.08.21>

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
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⑤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<신규 2019.02.28.>

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<신규 2019.02.28.>

**제12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〔본조신설 2018.08.21〕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6.7.11.〉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이사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8.21>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서면결의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
〈개정 2018.08.21〉〈개정 2019.02.28.〉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2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9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위 원 회

**제30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31조(운영)**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2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3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

을 받아야 한다.

**제34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2. 중앙정부의 지원금<개정 2018.08.21>
3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4. <삭제 2018.08.21>
5. <삭제 2018.08.21>
6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개정 2018.08.21>

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<신설 2018.08.21>

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<신설 2016.7.11.>

**제35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7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<삭제 2018.08.21>
2. <삭제 2018.08.21>
3. <삭제 2018.08.21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

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8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4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<개정 2016.07.11.>

**제42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,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
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

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(경과조치)**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복지기획관이 대행한다.

**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## **부 칙 (2016. 7.1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6.12.29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8. 8. 2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9. 2. 28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19. 7. 3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20. 6. 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〉

#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출 연 자 | 금 액         | 비 고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계   |       | 700,000,000 |      |
| 현 금 | 서울특별시 | 700,000,000 | 설립출연 |

##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

제정 2015.11.06.

개정 2016.07.11.

개정 2016.12.29.

개정 2018.08.21.

개정 2019.02.28.

개정 2019.07.31.

개정 2020.12.00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2.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〈개정 2020.06.01.〉
3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실태조사
4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,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, 문화·여가생활 지원, 상담
5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6.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
7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8.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, 출판 및 캠페인
9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

위탁하는 사업

10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〔본조 신설 2018.08.21〕

**제7조(공고방법)**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노동 이사 1명을 포함한다.)

〈개정 2020.12.00.〉

〈개정 2019.02.28.〉〈개정 2019.07.31.〉

4. 감사 2인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〈개정 2019.07.31.〉

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③ 노동 이사는 입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〈신설 2019.07.31.〉〈개정 2020.12.00.〉

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〈개정 2019.07.31.〉

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<개정 2019.07.31.>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<신설 2016.12.29.><개정 2019.07.31.>
- ⑤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07.31.>
- ⑥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<신설 2018.08.21.><개정 2019.07.31.>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 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직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.><개정 2019.02.28.><개정 2019.07.31.><개정 2020.12.00.>

-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- 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-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개정 2018.08.21>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-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  1. 경영전문가
  2. 사회복지,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<개정 2018.08.21>
 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
  4. 공인회계사

-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개정 2018.08.21>
- 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-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- ⑤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<신규 2019.02.28.>
-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<신규 2019.02.28.>

**제12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또한 이사회 안전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<개정 2018.08.21><개정 2020.12.00.>

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
〈개정 2020.12.00.〉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〔본조신설 2018.08.21〕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6.7.11.〉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 제4장 이 사 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8.21>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서면결의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
〈개정 2018.08.21〉〈개정 2019.02.28.〉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2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9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위 원 회

**제30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31조(운영)**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2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3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

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4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2. 중앙정부의 지원금<개정 2018.08.21>
3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4. <삭제 2018.08.21>
5. <삭제 2018.08.21>
6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개정 2018.08.21>

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<신설 2018.08.21>

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<신설 2016.7.11.>

**제35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7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<개정 2020.12.00.>

1. <삭제 2018.08.21>

2. <삭제 2018.08.21>

3. <삭제 2018.08.21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8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4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<개정 2016.07.11.>

**제42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,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
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(경과조치)**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복지기획관이 대행한다.

**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# **부 칙 (2016. 7.1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16.12.29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18. 8. 2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19. 2. 28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19. 7. 3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20. 6. 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〉

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출 연 자 | 금 액         | 비 고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계   |       | 700,000,000 |      |
| 현 금 | 서울특별시 | 700,000,000 | 설립출연 |

##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

### 1.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③에 따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

**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**  
[시행 2020. 1. 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448호, 2020. 1. 9., 일부개정]



서울특별시(공기업담당관), 02-2133-6784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---- (중략) -----

**제22조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**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 <신설 2019. 9. 26.>

[본조신설 2018. 1. 4.]  
[제목개정 2019. 9. 26.]

### 2. 예비비 사용을 위한 절차

- 봉급 예비비의 인건비 전용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안건 제출(2020.9.23.)
- 시 공기업담당과 및 인생이모작지원과 사전협의(2020.10.14.~)
- 제5회 임시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원안 의결(2020.10.29.)
-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(2020.11.10.)
-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(2020.12.17.)

| 일자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-|---|
| 2020.9.23.   |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년 제5회 임시 이사회 개최계획 보고 및 안건 제출 |
| 2020.10.14.~ | 인생이모작지원과 및 공기업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일자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|--|
| 2020.10.29. | <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><br>■ 상정안건<br>○ [의안 제117호] 2020년 사업계획 변경(안)<br>○ [의안 제118호]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<br>■ 의결 결과 : 원안대로 의결<br>○ 2020년 예비비 982백만원 중 증원인력 봉급예비비(25명) 397백만원 인건비로 전용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결 |
| 2020.11.10. |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년 제5회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<br>(공문번호 : 인생이모작지원과-14417)   |
| 2020.12.17. |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보고   |

### 3. 예비비 사용 내역

#### ○ 전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| 지출과목 | 2회 추경     | 3회 추경     | 증, 감     | 비고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예비비  | 982,421   | 585,250   | △397,171 | '20년 8월 신규채용 정원증원인력(25명)의 봉급 예비비 → 인건비 전용 |
| 인건비  | 5,541,244 | 5,144,073 | 397,171  |   |

#### 【예비비】

- 예비비 : △397,171천원

➡ 증원인력(25명) 인건비 전용 : △397,171천원  
 : (경정)585,250천원 - (기정)982,421천원

#### 【인건비】

- 인건비 : 397,171천원

➡ 증원인력(25명) 급여 추가 편성 : 397,171천원  
 : (경정)5,541,244천원 - (기정)5,144,073천원

○ 예산 편성 및 사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| 단위사업  | 세부사업 | 편성목   | 편성<br>금액 | 지출금액(예정액 포함)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8월           | 9월     | 10월    | 11월     | 12월     |
| 소계    |      |       | 397,171  | 17,353       | 68,840 | 71,575 | 104,284 | 135,119 |
| 일반관리비 | 인건비  | 기본급여  | 327,369  | 16,205       | 62,791 | 62,791 | 92,791  | 92,791  |
|       |      | 채수당 등 | 69,802   | 1,148        | 6,049  | 8,784  | 11,493  | 42,328  |

**4. 붙임**

- 붙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총괄표

【붙임】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

##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회 추경 예산(안)       |                | 2회 추경 예산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증△감 (당초대비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수 입 합 계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22,918,607</b> |                | <b>22,482,199</b> |                 | <b>436,408</b> | <b>2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입 (A)        | 출연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| 13,860,655        | 60             | 13,860,655        | 6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사업수입                      | 324,356           | 1              | 487,948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△163,592       | △34                      | 후관에 따른 사업 수입금 감소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사업외수입                     | 822,014           | 4              | 222,014           | 1               | 600,000        | 270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주택토지공사(LH) 기부금수입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이월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| 2,581,482         | 11             | 2,581,482         | 11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보조금사업                     | 4,521,254         | 19             | 4,521,254         | 20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위수탁사업                     | 808,846           | 4              | 808,846           | 4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지 출 합 계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22,918,607</b> |                | <b>22,482,199</b> |                 | <b>436,408</b> | <b>2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 출 (B)        | <b>인건비</b>                | <b>5,541,244</b>  | <b>24</b>      | <b>5,144,073</b>  | <b>23</b>       | <b>397,171</b> | <b>8</b>                 | 증원인력(25명) 급여 반영(예비비-인건비)     |
|                | <b>운영비</b>                | <b>2,398,824</b>  | <b>11</b>      | <b>2,398,824</b>  | <b>11</b>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<b>사업비</b>                | <b>13,920,329</b> | <b>61</b>      | <b>13,483,921</b> | <b>60</b>       | <b>436,408</b> | <b>3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중장년층인생재설계및사회참여지원          | 220,304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20,304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0+일모텔개발및화산               | 2,084,096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474,096         |                 | 610,000        | 41                       | 점프업5060 기부금 및 북부캐피탈 개관행사비 반영 |
|                | 현장공감형50플러스캐피탈사업활성화        | 3,695,082         |                | 3,759,263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△64,181        | △2                       | 코로나-19로 인한 사업 조정 반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0+시정을선도하는정책개발강화          | 559,297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72,627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△13,330        | △2                       | 코로나-19로 인한 사업 조정 반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0+세대의사회공헌활동문화조성          | 179,001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80,001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△1,000         | △1                       | 코로나-19로 인한 사업 조정 반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0+거버넌스및파트너십구축으로 협력상생문화조성 | 26,464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30,70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△4,236         | △14                      | 코로나-19로 인한 사업 조정 반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0+신문화확산을통한인식제고및참여활성화     | 631,147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721,992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△90,845        | △13                      | 코로나-19로 인한 사업 조정 반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지속성장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       | 1,194,838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194,838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(보조금사업)서울시50+보람일자리사업      | 3,301,766         |                | 3,301,766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(보조금사업)서울시50+뉴딜인턴십사업      | 1,219,488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219,488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(위수탁)도삼권50플러스센터 운영사업 등    | 808,846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808,846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<b>성과급</b>                | <b>472,960</b>    | <b>2</b>       | <b>472,960</b>    | <b>2</b>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예비비</b>     | <b>585,250</b>            | <b>2</b>          | <b>982,421</b> | <b>4</b>          | <b>△397,171</b> | <b>△40</b>     | 증원인력(25명) 급여 반영(예비비-인건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